

##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6
----------	----

발의년월일 : 1994. 7. 11.

발 의 자 : 정환모 의원외 12인

###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1994.3.15 법률 제4741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1994.7.6 대통령령 제14317호)으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연장하고, 감사 및 조사도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외에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부산직할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임.

### 주요 골자

-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당초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함(제2조 제2항)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외에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3조)
-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부산직할시의 사무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6조 제3항)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참고인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관련되는 조례에 의하도록 함.

##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감사) 제1항중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를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로 한다.

제2항중 “3일이내”를 “7일이내”로,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를 “본회의에서 작성하거나 또는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로 한다.

제4항중 “이를 승인하거나”를 “이를 채택 또는 승인하거나”로 하고

제5항중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을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으로 한다.

제3조(조사) 제3항중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를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로 한다.

제5항중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고 “승인을 얻어”를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7항중 “승인된 때에는”을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사무)

③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부산직할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항중 “감사 또는 조사 대상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을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으로 하고,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을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는”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 참고인등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각각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 ① 의회는 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p> <p>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 중 3일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p> <p>③ (생략)</p> <p>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p> <p>⑤ 의회 의장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3조(조사)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p> <p>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p> <p>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신설)</p>	<p>제2조(감사) ① - - -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소관 상임위원회별로</p> <p>② - - - - -</p> <p>- 7일이내로 - - - - ,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상임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 - - - - 이를 채택 또는 승인하거나 - - - - -</p> <p>⑤ - - - - - 본회의에서 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 - - - -</p> <p>제3조(조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p> <p>- - - - - 본회의에서 조사를 행하거나 소관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 - - - -</p> <p>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 - - - -</p> <p>- - - - -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 - - - -</p> <p>⑦ - - - - -</p> <p>의결 또는 승인된 때에는 - - - - -</p> <p>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구 및 구청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부산직할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중 국회와 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감사를 행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u>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 진술</u>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u>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u>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신설)</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u>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u>는 ----- ----- ----- <u>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u> ----- ----- <u>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의 요구</u>는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증인, 참고인 등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절차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언, 감정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p>	<p>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 ----- <u>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u>에서 ----- ----- -----</p>
<p>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u>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u>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1조(공개의 원칙) ----- ----- <u>다만, 본회의 또는 감사, 조사위원회의</u> ----- -----</p>